-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33호

2021. 08. 31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8. 17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08. 20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08. 31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재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에 이를 반영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함.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○ 「지방세법」제74조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2020.12.29.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"균등분", "재산분",을 "개인분"과 "사업소분"으로 개정되었음.

○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 내용 및 의견

○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또한,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